

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송아량 의원 (대표)발의)

의안 번호	482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9년 3월 22일

발 의 자 : 송아량 의원(1명)

찬 성 자 : 이병도, 이승미, 최 선, 김태호,
추승우, 채유미, 양민규, 임만균,
송정빈, 이동현, 문병훈 의원(11명)

1. 제안 이유

- 최근 취객에 의한 여성 택시기사 폭행 사건 등을 포함해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범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택시 내부에 택시운수종사자를 폭력 등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장비나 장치도 없는 실정인 바, 폭력 등 위협으로부터 택시운수종사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택시 내부에 보호격벽 등 안전장치 설치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택시운수종사자와 택시 이용 승객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을 담보하고자 함
- 아울러 서울시가 더 이상 재정지원을 하지 않는 ‘외국인 관광택시 운영을 위한 사업’과 경과 규정에 따라 더 이상 재정지원이 되지 않는 ‘심야승차난 해소를 위한 지원 사업’, ‘운수종사자 복장 지원 사업’에 대해서는 조문 정리를 위해 삭제하고자 함

2. 주요 골자

- 가. 폭력 등 위험으로부터 택시운수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택시 내부에 설치하는 보호격벽 등 장치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신설함(안 제10조제2호)

3. 참고 사항

- 가. 관련 법령 :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·시행규칙
- 나. 예산 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)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0조(재정지원 및 예산의 확보 등) 시장은 예산범위 안에서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, 중장기 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소요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1. 운수종사자의 교육
2. 폭력 등 위협으로부터 택시운수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차내 장치 설치

조례 제6045호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.

조례 제6493호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부칙 제1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0조(재정지원 및 예산의 확보 등) 시장은 예산범위 안에서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, 중장기 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소요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<u>1. 외국인 관광택시 운영을 위한 사업</u></p> <p><u>2. 심야승차난 해소를 위한 지원 사업</u></p> <p><u>3. 운수종사자 복장 지원 사업</u></p> <p><u>4. 운수종사자의 교육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신 설></p>	<p>제10조(재정지원 및 예산의 확보 등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<삭 제></p> <p><삭 제></p> <p><삭 제></p> <p><u>1. 운수종사자의 교육</u></p> <p><u>2. 폭력 등 위협으로부터 택시운수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차내 장치 설치</u></p>
<p>부칙 <제6045호, 2015.10.8></p> <p>제1조(시행일) (생략)</p> <p><u>제2조(심야승차난 해소를 위한 지원 사업) 제10조제2호의 규정은 2016년 12월 31까지로 한다.</u></p>	<p>부칙 <제6045호, 2015.10.8></p> <p>제1조(시행일) (현행과 같음)</p> <p><삭 제></p>
<p>부칙 <제6493호, 2017.5.18.></p> <p><u>제1조(유효기간) 제10조제3호의 규정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.</u></p>	<p>부칙 <제6493호, 2017.5.18.></p> <p><삭 제></p>